

보 / 도 / 자 / 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례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 개인통보 제출 기자회견

2004년 10월 18일 (월) 오전 11시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정민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1. 유엔 인권이사회 소개 및 한국의 개인통보 제출 사례
/ 김기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 간사)
 2. 최명진, 윤여범씨 사례 개인통보 제출의 의의 및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한국정부의 책임
/ 이석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질의응답

<자료순서>

1. 유엔 인권이사회와 개인통보 제도 (2쪽)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유엔의 입장 (4쪽)
3. 최명진, 윤여범씨 인권이사회 개인통보 내용 (5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Tel. 02-393-9085 Fax. 02-363-9085 E-mail. corights@jinbo.net 문의: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 017-311-4245)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기독교사회시민연대/ 녹색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당/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지지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호근 지지모임 평화사랑/ 여성해방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 인권운동을 위한 열린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전쟁없는세상/ 좋은벗들/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함께가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총 36개 인권사회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와 개인통보 제도

1) 유엔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mmittee)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 세계 153개국이 가입해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의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기구로서 1976년에 설치되었다. 인권이사회는 규약 당사국들에 의해 선출된 18명의 인권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중 세 차례 제네바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갖는다. (인권이사회 제82차 회가: 2004년 10월 18일~11월 5일, 스위스 제네바) 인권이사회의 주요 임무는 △ 당사국 이행보고서 검토 (5년마다 제출) 및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권고 △ 규약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s) 제공 △ 개인통보 (Individual Complaint/Communication) 심리 및 결정(View)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종종 유엔 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와 혼동되는데, 인권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기구로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아니라 유엔 헌장에 따라 설립되었고 53개 위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위원회는 매년 3월부터 6주간 제네바에서 회의를 갖고 △ 전 세계 인권상황 모니터 △ 인권침해 사례조사 △ 인권기준 설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논의하며 해당 의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다.

2) 개인통보제도 (Individual Complaint/Communication)

개인통보제도는 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의 이행감시기구인 인권이사회에 직접 통보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고 규약 당사국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제도이다. 개인통보제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CCPR)에 가입한 국가(2004년 10월 현재, 총 104개국)에 한하여 적용된다. 개인통보가 인권이사회의 심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사건이어야 한다. 개인통보가 접수되면 인권이사회는 우선 통보의 적격성(Admissibility) 여부를 심사한 후 관련 당사국에 통보사건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관련 당사국은 통보사건에 대해 취하여진 국내 구제조치, 통보의 심리적격과 본안문제에 관하여 6개월 이내에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은 해당 당사국의 진술에 대해 추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인권이사회는 피해자와 관련당사국이 제출한 모든 서면정보를 종합하여 규약 상의 권리침해 여부와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들을 결정하여 당사국에 통지한다. 인권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리지만, 사안의 긴급성과 심각성에 따라 피해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지 위해 인권이사회는 최종결정 이전이라도 관련당사국에 잠정조치(Interim Measures)를 취할 것을 통지하기도 한다. 2004년 8월 현재, 인권이사회는 277건의 개인통보 사건을 심사중이다.

<참조> 인권이사회의 개인통보 처리현황 (2004년 8월 기준 / 출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www.ohchr.org))

심리중		종결			계
적격여부	본안	각하(부적격)	철회 또는 심리중지	결정 (규약위반/기각)	
270	7	270	181	472 (365/107)	1,300

3) 한국의 인권이사회 개인통보 사례

2004년 8월까지 한국정부를 상대로 인권이사회에 개인통보가 제기된 사건은 총 10건으로 이 중 6건에 대해 인권이사회가 결정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 5건에서 한국정부가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규약 위반 사건들의 간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손종규(1995, Communication No. 518/1992) 노동쟁의조정법 상의 제3자 개입금지 사건
- 박태훈(1998, Communication No. 628/1995) 국가보안법 7조 (반국가단체 고무, 찬양, 이적단체 구성)
- 김근태(1999, Communication No. 574/1994) 국가보안법 7조 (반국가단체 고무, 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유포)
- 강용주(2003, Communication No. 878/1999) 사상전향, 준법서약제 등
- 신학철(2004, Communication No. 926/2000) 국가보안법 7조 (이적표현물 제작)

<참조> 한국의 인권이사회 개인통보 사례현황 (2004년 8월 기준 / 출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www.ohchr.org))

심리중		종결			계
적격여부	본안	각하(부적격)	철회 또는 심리중지	결정 (규약위반/기각)	
2	-	1	1	6 (5/1)	10

4) 인권이사회 결정의 효력 및 국내적 이행

인권이사회는 그 자체로는 당사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당성과 객관성, 설득력을 갖추어 왔기 때문에 그 결정 내용은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당사국은 선택의정서 가입을 통하여 개인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심리권을 인정하였고 규약상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인권이사회 결정은 당사국에 대하여 간접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지난 2003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인권협약에 따른 개인통보제도의 결정을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결정을 이행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2003년 12월 10일) 내용 中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엔인권협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선택의정서와 인종차별철폐협약이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03년 12월 현재까지 4건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으나, 국내에서 배상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근거법령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조약당사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 ...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이 가입 및 공포한 국제인권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실제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실질적인 구제방법이 없음” ... “개인통보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권리구제조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엔 인권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결정이 국내에서 이행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까지 근거법안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구제조치를 받지 못한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비롯한 조치를 취해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유엔의 입장

■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

<참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인권이사회 일반논평 22호 (1993년 채택) 中

11. 많은 개인들이 병역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병역거부권)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명시된 자유권에 기초를 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병역수행 혹은 국가대체복무를 금지하고 있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강제적 병역 수행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기하는 국가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규약은 병역거부권에 관하여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러한 권리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8조에서 기인한 것임을 믿는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해야 하는 명령은 양심의 자유 및 개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와 심각하게 상충한다. 이러한 권리가 법 또는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념의 특징을 기준으로 병역거부자들 사이에 어떠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병역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인권이사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명시된 권리들에 의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의 상황 및 대체복무의 특징과 기간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당사국을 회의에 참석시킨다.

■ 유엔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유엔인권위원회는 1989년에 채택한 제59호 결의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라는 점을 천명하였고,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채택한 결의들에서 이 점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참조>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2004/35) 시민적·정치적 권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유엔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생명과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인정되어 있음을 명심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본 인권위원회의 과거 결의 사항들, 특히, 모든 사람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유엔인권이사회 일반논평 22호에 규정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1998/77호 결의(1998.4.22)의 내용을 상기하며,

1.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모범사례를 편찬, 분석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보고서(E/CN.4/2004/55)에 주목한다.
2.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 준 정부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3. 아직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자국의 현행 법률과 관행들을 본 인권위원회의 1998/77호 결의에 비추어 재검토하지 않은 국가들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보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그 작업을 수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4.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사면·복권 등을 제공하고 그러한 조치가 법률과 관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전후 평화건설 과정에 있는 국가들에게 권장한다.
5. 모든 적절한 출처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모범사례에 관한 보충적 정보를 담은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62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요청한다.

<참조> 유엔인권위원회, 종교와 신념에 관한 특별보고관 (Mr. Abdelfattah Amor) 보고서 (2003년 1월) 中

68.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며, 양심의 자유는 국방의 의무를 위한 타당한 제한이라는 한국정부의 답변에 대하여) 종교와 신념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 의 일반논평 22호에 따르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며, 살상무기를 들도록 강요하는 의무는 양심의 자유 및 종교, 신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최명진, 윤여범씨 인권이사회 개인통보 내용

최명진(1981년생), 윤여범(1980년생)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으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각각 2004년 7월 15일, 22일 대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두 사건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 중 국내적 구제절차를 마친 첫 사건들로 유엔 인권이사회 개인통보 제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들의 개인통보 서면은 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한국정부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침해에 관한 자료 등과 함께 오늘부터 제네바에서 제82차 회기를 갖게 되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접수될 예정이다. 또한 Quakers UN Offices (QUNO), War Resisters' International 등 제네바 현지의 인권단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본 개인통보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한국의 병역거부자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별첨> 최명진, 윤여범씨 유엔인권이사회 개인통보 서면